

첨부 9

채용목표제 시행 안내사항

□ 양성평등 채용목표제

- (관련근거) 「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」 제21조
- (적용대상) 일반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
- (적용방법) 각 전형단계별(서류, 필기) 합격권에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%에 미달할 경우, 총점이 '합격선 -3점' 이내인 해당 성별의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 서열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

구 분	해당 모집단위	인원산정 시 소수점 기준
5인 이상 10인 미만	(일반-지역인재外) 사무, 전기, 전자 (일반-지역인재) 기계	소수점 이하 버림
10인 이상	(일반-지역인재外) 기계	소수점 이하 반올림

※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 적용 예시

- 일반분야-지역인재外-사무 모집단위 채용예정인원이 6명인 경우
 - 필기전형 성별 합격목표인원 = 5명 ($6명 \times 3배수 \times 30\% = 5.4명$)

□ 지역인재(비수도권) 채용목표제

- (관련근거)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(적용방법) 일반 및 고졸인재 분야의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별도의 인원으로 할당하여 채용 첨부2 참조